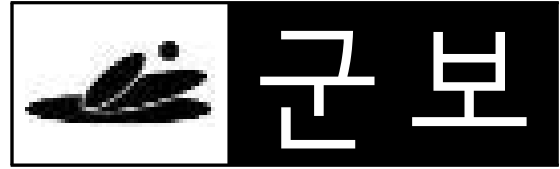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40호 2019. 6. 17.(월)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9 - 69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19 - 70호 : 예산군 귀곡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 5
- 예산군 고시 제2019 - 7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
- 예산군 고시 제2019 - 73호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11
- 예산군 고시 제2019 - 7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3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9 - 944호 :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회 람									
--------	--	--	--	--	--	--	--	--	--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1)

예산군 고시 제2019 - 69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1.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0-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25	20190531	신축	20120420	공공기관에 연계된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886-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427-37	20190531	신축	20090825	청양읍 교월리-예산군 신양면을 연결하는 국도로 두지명을 합성	
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8-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향방산로 453	20190531	신축	20091113	상향리와 방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36-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31-55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암면)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2-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06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암면)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13-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05-35	20190531	신축	20091113	응봉면의 중심도로로 지역적 위치를 반영	
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화진리 135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410-29	20190531	신축	20091113	봉산면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112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상궁길 146-37	20190531	신축	20091113	구만리와 상궁리를 이어주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97-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5-39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를 이용하여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44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1길 26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동산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944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별리길 474-5	20190531	신축	20091113	삼교읍 두리와 신암면 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상하리 300-3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상하북길 100-14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하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2-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죽골길 133-37	20190531	신축	20091113	대나무가 많다하여 불려지는 고유지명(손죽골)을 반영	
1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93-11, 산50-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종경길 141	20190528	신축	20091113	오산리와 종경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 302, 30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지곡지롤길 67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지곡리)과 고유지명(지롤)을 이용하여 명명	
16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 84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지곡지롤길 137-9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지곡리)과 고유지명(지롤)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4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재호지길 41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호음)과 고유지명(재호지)을 이용하여 명명	
1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492-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머말길 59-4	201905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화천)과 고유지명(머말)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수평로 64-8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수평로 64-6	20190528	착오부여 정정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453	20190527	건축물 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머말길 59-4	20190529	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	

예산군 고시 제2019 - 70호

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 어메니티 유지·보전과 쾌적한 마을 조성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귀곡권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활기차고 매력있는 농촌마을로 조성, 농촌지역 활성화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타 권역과 차별성 있는 계획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귀곡1리, 귀곡2리) 일원

나. 면 적 : 496.4ha

다.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커뮤니티센터, 산책로조성, 안전·재난대비시스템 구축, 도로정비, 버스승강장
- 지역소득증대 : 소포장가공시설
- 지역경관개선 : 수목식재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정보화구축,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등

4. 소요사업비 : 3,467백만원(국비: 2,385백만원, 지방비: 1,022백만원, 자부담: 6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1년(4개년)

6.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

8.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2, 766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기능별	세부공종	단위	수량	총사업비	연차별				비고
					'18	'19	'20	'21	
합 계				<59.6> 3,407.0	217.2	<59.6> 921.5	1,188.3	1,080.0	
기초생활 기반충	소 계			2,312.7	-	474.9	978.5	859.3	
	귀곡 커뮤니티센터	㎡	565.6	2,082.1	-	398.2	978.5	705.4	
	산책로 조성	m	670	44.2	-	44.2	-	-	
	안전·재난대비시스템	개소	3	64.5	-	-	-	64.5	
	도로정비 및 안전확보	구간	6	89.4	-	-	-	89.4	
	버스승강장 정비	개소	1	32.5	-	32.5	-	-	
지역특 소증대	소 계			<59.6> 238.3	-	<59.6> 238.3	-	-	
	소포장가공시설 신축	㎡	166.5	<59.6> 238.3	-	<59.6> 238.3	-	-	
지역경관 개선	소 계			35.0	-	-	-	35.0	
	수목 식재	㎡	200	35.0	-	-	-	35.0	
지역영 강화	소 계			287.5	-	93.8	99.2	94.5	
	교육 및 견학	식	1	131.3	-	45.7	47.7	37.9	
	홍보 및 마케팅	식	1	28.8	-	18.8	5.0	5.0	
	소셜네트워크 구축	식	1	22.5	-	-	17.7	4.8	
	전문가 컨설팅	식	1	40.1	-	22.1	-	18.0	
	마을경영지원	식	1	64.8	-	7.2	28.8	28.8	
부대 비용	소 계			533.5	217.2	114.5	110.6	91.2	
	기본계획비	식	1	61.0	61.0	-	-	-	
	세부설계비	식	1	89.0	57.3	31.7	-	-	
	공사감리비	식	1	221.0	-	60.8	84.0	76.2	
	사업관리비	식	1	43.0	-	11.4	16.6	15.0	
	지반조사비	식	1	8.6	8.6	-	-	-	
	예비비	식	1	110.9	90.3	10.6	10.0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커뮤니티센터 신축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180-3	도	99.0	70.0	예산군	
2	귀곡리	204-1	답	2,176.0	2,176.0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3	귀곡리	948-1	도	839.0	173.0	농림축산식품부	
4	귀곡리	959-3	도	148.0	47.0	농림축산식품부	
5	귀곡리	881-1	도	557.0	10.0	건설교통부	
합 계				3,819.0	2,476.0		

■ 산책로 조성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948-4	구거	2,542.0	165.9	농림축산식품부	
2	귀곡리	950-8	구거	7,408.0	488.2	농림축산식품부	
3	귀곡리	953-7	구거	6,311.0	395.9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16,261.0	1,050.0		

■ 안전·재난대피시스템 구축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204-1	답	2,176.0	1.0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2	귀곡리	303-3	도	231.0	1.0	성영원 외 8인	
3	귀곡리	955-10	도	1,471.0	1.0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3,878.0	3.0		

■ 도로정비 및 안전확보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도로정비1	귀곡리	889-20	구거	1,957.0	73.7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2	귀곡리	1098	구거	14,197.8	64.1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3	귀곡리	947-2	구거	1,149.0	87.9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947-1	도	1,193.0	8.5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4	귀곡리	947-5	구거	6,972.0	60.8	농림축산식품부	
도로정비5	귀곡리	952-4	구거	7,098.0	206.5	농림축산식품부	
	귀곡리	952-3	도	198.0	8.7	농림축산식품부	
도로확장1	귀곡리	303-3	도	231.0	23.1	성영원 외 8인	
	귀곡리	303-7	임야	1,306.0	23.2	성영원 외 8인	
	귀곡리	1182	구거	8,064.4	16.4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42,366.2	572.9		

■ 버스승강장 정비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952-4	구거	7,098.0	24.5	농림축산식품부	
2	귀곡리	955-1	도	1,643.0	26.3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8,741.0	50.8		

■ 소포장가공시설 신축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204-1	답	2,176.0	166.5	귀곡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합 계				2,176.0	166.5		

■ 수목식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귀곡리	116-2	도	789.0	200.0	건설교통부	
합 계				789.0	200.0		

예산군 고시 제2019 - 7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7.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82-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71	20190607	재건축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102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307-11	20190607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661-1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로 311-6	20190607	신축	20090825	홍성군 금마면과 예산군 대흥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의 명칭을 반영하여 봉수산로로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이리 4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30	20190607	누락	20091113	다락처럼 생긴 산이 있다하여 다랑미에서 유래	
5	충청남도 예산군 웅봉면 계정리 196-1	충청남도 예산군 웅봉면 계정길 149-38	201906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계정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12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96번길 54	20190607	신축	20091113	벚꽃로 2,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35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364-16	20190607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수철리)를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170-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외석곡길 40-21	20190607	신축	20091113	석곡 발끝쪽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9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1320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오촌길 166-81	20190607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 727-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장신신흥길 32	20190607	신축	20091113	장신리와 신흥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예산군 고시 제2019 - 73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4.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20 외 8건(직권부여 9건)

번호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부여현황	통보대상자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연번	업무구분	도로 명 주소	상세주소 고지 결과	통보대상
			층, 호	
1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 대학로 20	201,202,203,204,205,206 301,302,303,304,305,306 401,402,403,404,405	소유자
2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 발연로 40	101,102,103,104 201,202,203,204 301,302,303	소유자
3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역전로70번길10	201,202 301	소유자
4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산성길23번길4	201,202,203,204 301,302,303,304 401,402,403	소유자
5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산성길231번길8	A동 101,102,103,104 201,202,203,204 301,302,303,304 B동 101,102,103,104 201,202,203,204 301,302,303,304	소유자
6	상세주소부여(직권)	예산읍예산로37번길23	101 201,202	소유자
7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역전로70번길9	201,202,203 301,302,303	소유자
8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관양산길36-24	101,102,103,104,105,106 201,202,203,204,205,206 301,302,303,304,305,306	소유자
9	상세주소 부여(직권)	예산읍아리랑로144번길7-13	A동 101,102,103,104 201,202,203,204 301,302,303,304 B동 201,202,203,204,205,206 301,302,303,304,305,306 401,402,403,404,405,406	소유자

예산군 고시 제2019 - 74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4.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93~4)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26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예당궁모로 358-33	20190614	신축	20110624	예산지역 출신 위인인 정궁모 제독을 기리기 위한 기존도로명 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31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30-6	20190614	신축	20091113	옛 지명(간량골,간량동)을 이용하여 간양길로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75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50-11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지리) 및 고유지명(한곡)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68-6, 468-15, 468-1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6길 36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251-27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도토성1길 15-11	20190614	신축	20091113	읍내 토성터 안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6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 803-209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두리 1길34-5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두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미곡리 332, 330, 331, 332-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미곡길 67-73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미곡리)을 이용하여 명명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153-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구룡길 58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별리)과 고유지명(구룡)을 이용하여 명명	
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4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궁5길 127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상궁리)을 이용하여 명명	
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01-21, 산34-1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1길 21-36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시량리)을 이용하여 명명	
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72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3길 74-34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양리)을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2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길 395	201906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여래미)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웅봉면 주령리 400-1	충청남도 예산군 웅봉면 산단1길 1	20190614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453	20190527	건축물 멸실	
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머말길 59-4	20190529	건축물 멸실 및 재건축	

예산군 공고 제2019-944호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함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영 제43조제3항 관련)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안 제23조 관련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13, 별표16, 별표17, 별표19, 별표21, 별표22, 별표23)
-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의원 변경
-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 태양광 발전시설 및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제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7. 10일까지 예산군수(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예산군 도시재생과

- 주소 : 우 32435/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도시재생과

- 전화 : 041-339-7702(FAX 041-339-77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예산군 홈페이지 <http://yesan.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붙임 :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과(실)장”을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기획담당관·환경과장·건설교통과장·도시재생과장·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p>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같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같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p>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p>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하고 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별로 산정 한다. (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정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15,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100미터, 15,000제곱미터 초과 20,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150미터, 20,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15,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300미터, 15,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3)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시설은 제외)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5호 이상의 주택(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은 하천구역선에서 신청부지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

별표 4 제7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7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7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2호 중 “음·식료품”을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음·식료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충전소·저장소”를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7호 중 “충전소·저장소”를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충전소·저장소”를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5호 중 “충전소·저장소”를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11 제8호 중 “충전소·저장소”를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12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 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0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 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2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9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7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3 제11호 중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를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승인 받은 시설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신설></p> <p>(생략)</p>	<p>제14조(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제35조(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생략)</p> <p>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p>	<p>제35조(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경관지구</u>----- ----- ----- --.</p>
<p>제59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u>도시·건축관련과(실)장</u>으로 한다.</p>	<p>제59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산업건설국장·기획담당관·환경과장·건설교통과장·도시재생과장·안전관리과장----- --.</p>

④ ~ ⑥ (생 략)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예산군 군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및 「예산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생 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같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같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같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같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p>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건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u>1천제곱미터</u>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u>2,000㎡</u>미만(이 경우 <u>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20미터이상으로 한다</u>)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u>50m</u>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u>500m</u>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u>200m</u>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산정 한다.</p>
<p>(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u>관련부서와 협의</u> 한다.</p>
<p>(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u>2,000㎡</u> 초과 <u>15,000㎡</u> 이하시 직선거리 <u>100m</u>, <u>15,000㎡</u>초과 <u>20,000㎡</u> 이하시 직선거리 <u>150m</u>, <u>20,000㎡</u> 초과시에는 <u>200m</u>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면적이 <u>2,000㎡</u>초과 <u>15,000㎡</u> 이하시 직선거리 <u>300m</u>, <u>15,000㎡</u> 초과시에는 <u>500m</u>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u>3m</u>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u>1m</u>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u>2m</u>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건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u>1,000제곱미터</u>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p>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u>2,000제곱미터</u> 미만(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u>100미터</u> 이상 이격하고 <u>연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u>)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u>50미터</u>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u>500미터</u>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u>200미터</u>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산정 한다.</p>
<p>(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정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u>관련부서와 협의</u> 한다.</p>
<p>(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u>2,000제곱미터</u> 초과 <u>15,000제곱미터</u> 이하 시 직선거리 <u>100미터</u>, <u>15,000제곱미터</u> 초과 <u>20,000제곱미터</u> 이하 시 직선거리 <u>150미터</u>, <u>20,000제곱미터</u> 초과 시에는 <u>200미터</u>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 면적이 <u>2,000제곱미터</u> 초과 <u>15,000제곱미터</u> 이하 시 직선거리 <u>300미터</u>, <u>15,000제곱미터</u> 초과 시에는 <u>500미터</u>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u>3미터</u>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u>1미터</u>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u>2미터</u>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p> <p>(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p> <p><신 설></p>
나. ~ 마.	(생 략)

	<p>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p> <p>(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p> <p>3)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시설은 제외)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5호 이상의 주택(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p> <p>(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은 하천구역선에서 신청부지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p>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3호 관련)

(생 략)

1. ~ 6.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3호 관련)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다만,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 21. (생 략)

<신 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4호 관련)

1. ~ 6.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 21. (생 략)

<신 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5호 관련)

1. ~ 6.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 21. (생 략)

12. ~ 21. (현행과 같음)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4호 관련)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다만,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 22. (현행과 같음)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5호 관련)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다만,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6호관련)

- 1. (생 략)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지 않는 것
- 3. ~ 7. (생 략)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 ~ 15. (생 략)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7호관련)

- 1. ~ 6. (생 략)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 14. (생 략)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8호관련)

- 1. ~ 3. (생 략)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 9. (생 략)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6호관련)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일반계 인제공업의 시설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지 않는 것
- 3. ~ 7. (현행과 같음)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9. ~ 15. (현행과 같음)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7호관련)

- 1. ~ 6. (현행과 같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8. ~ 14. (현행과 같음)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8호관련)

- 1. ~ 3. (현행과 같음)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5. ~ 9. (현행과 같음)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9호관련)

- 1. ~ 4. (생 략)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6. ~ 11. (생 략)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0호관련)

- 1. ~ 7. (생 략)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9. ~ 15. (생 략)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2호관련)

- 1. ~ 11. (생 략)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13. ~ 22. (생 략)
- <신 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5호관련)

- 1. ~ 9. (생 략)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11. ~ 22. (생 략)
- <신 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9호관련)

- 1. ~ 4. (현행과 같음)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6.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0호관련)

- 1. ~ 7. (현행과 같음)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9. ~ 15. (현행과 같음)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2호관련)

- 1. ~ 11. (현행과 같음)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13. ~ 22. (현행과 같음)
-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5호관련)

- 1. ~ 9. (현행과 같음)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11. ~ 22. (현행과 같음)
-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6호관련)

- 1. ~ 11. (생 략)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13. ~ 26. (생 략)

<신 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8호관련)

- 1. ~ 8. (생 략)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10. ~ 20. (생 략)

<신 설>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0호관련)

- 1. ~ 6. (생 략)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8. ~ 15. (생 략)

<신 설>

비고 (생 략)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1호관련)

(생 략)

- 1. ~ 5. (생 략)

<신 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6호관련)

- 1. ~ 11. (현행과 같음)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13. ~ 26. (현행과 같음)
-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8호관련)

- 1. ~ 8. (현행과 같음)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10. ~ 20. (현행과 같음)
-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0호관련)

- 1. ~ 6. (현행과 같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8. ~ 15. (현행과 같음)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1호관련)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6. ~ 8. (생 략)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2호관련)

1.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2. ~ 20. (생 략)

<신 설>

7. ~ 9.(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2호관련)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 20. (현행과 같음)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예산군 군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2.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중소 사업 연차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 작 성 자 : 도시계획과장 윤찬기, 도시계획팀장 이익수, 복합민원팀장 장석우, 담당자 최정석, 유상협, 이재학								
4. 근거법령명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3)			관 련 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3)항의 개정(신설)로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자원순 환관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임.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심의기준 [별표1]가.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미만(이 경우 연 접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20미터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규제)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심의기준 [별표1]가.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 합 하어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주택 부지 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하고 연결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심의기준 [별표1]가. 3)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시설은 제외)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5호 이상의 주택(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은 하천구역선에서 신청부지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
7. 규제 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 시 까지 - 환경·경관 훼손에 따른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향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존속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주변 환경·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입지 및 설치를 도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계획적 입지유도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환경·경관훼손을 최소화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 외 대체수단 없음

2. 규제 비용/편익 분석

- (비용)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에 대한 규제 개정 및 시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계량화 불가)
- (편익)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는 환산되지 않는 이익(경관, 생활 및 통행불편, 농작물 생육부진 등으로 부터의 최소화)이 발생되고,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입지로 인하여 경관, 통행 등의 여러 가지 환경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쇄 기준이 될 수 있음.(계량화 불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적정성)

- 태양광발전시설 신청부지면적 2,000㎡미만의 경우에 주택부지경계 및 도로법에 의한 거리제한과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제외)의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거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설정을 통해 경관훼손 및 주거환경 침해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실효성)

-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에 따른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산군 전체적으로는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 등에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